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8
----------	----

2018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 윤희천)

1. 제안이유

- 서울상상나라는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이 시설 운영은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및 노하우, 경험이 축적된 조직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기관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상상나라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위탁운영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상상나라 건립계획」(시장방침 제137호, 2008.03.20)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창의적인 전시개최와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상상나라 운영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함.
- 연간 50만명 이상 이용하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로서 체험관운영 경험이 요구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시와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다.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전반

○ 체험전시물 일체의 기획·개발, 조사·연구, 전시디자인·연출, 전시물

설계,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반 업무

-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체험관, 교육실, 사무실 등 전시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공간 및 장비·비품 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어린이대공원 내)
- 개관일자 : 2013. 5. 2.
- 시설규모 : 대지 6,600m², 연면적 19,692.5m²(지하 3층, 지상 3층)
- 지원시설 : 체험관, 가족쉼터, 생각놀이터, 영유아놀이터, 교육프로그램실, 공연장, 카페, 식당 등
- 이용대상 : 영유아 및 어린이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18. 11. 1. ~ 2021. 10. 31.)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뮤지엄경영연구소)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금1,004백만원(2018년 예산)
- 산출근거 : 금1,004백만원(2018년 예산)
 - 인건비 1,218백만원, 운영비 70백만원, 사업비 78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상상나라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9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상상나라 운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18.4월) 결과 : 적격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¹⁾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²⁾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의회는 그 동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과성 증대를 위해 시의회 동의절차 및 회계감사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해왔음.
 - 특히 현행 개정 「민간위탁조례」(2017.7.21.시행)에서는 시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부칙 제2조³⁾을 통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준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 서울상상나라는 2013년 최초 위탁 이후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의 형식으로 의회동의를 갈음해왔던 바, 「민간위탁조례」 부칙 제2조에 특례조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체험전시물 일체의 기획·개발, 조사·연구, 전시디자인·연출, 전시물설계,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반 업무
 -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체험관, 교육실, 사무실 등 전시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는 공간 및 장비·비품 관리 등

※ 서울상상나라 운영체계⁴⁾는 운영과 시설관리로 그 운영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으며, 시설관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17년 민간위탁에서 전환)으로 시행 중임.

- 서울상상나라는 2013년 5월에 개관한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광진구 소재)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전한 발달을 돋는 창의적인 전시

4) ○ 서울상상나라 운영체계

구 분	운 영(민간위탁)	시설관리(대행사업)
기 관 명	뮤지엄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기간	'16.5.2.~'18.10.31.(2년6개월)	'15.11.1.~'18.10.31.(3년)
업무구분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회원관리, 홍보, 전시물 보수 등	시설관리, 환경미화, 경비

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나고 즐겁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복합 체험문화시설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며, 자세한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서울상상나라 운영 민간위탁 추진 경위〉

- 서울상상나라 건립계획(시장방침 제137호, 2008.03.20)
- 서울상상나라 운영위탁 협약체결(삼성문화재단) : 2009. 12. 30
- 서울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 3. 28
- 서울상상나라 운영사무 민간위탁
 - 최초위탁(삼성문화재단) : 2013. 5. 2.~2016. 5. 1 (3년)
 - 재 위탁(뮤지엄경영연구소) : 2016.5.2.~2018.10.31 (2년6개월)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⁵⁾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복합문화체험시설인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은 같은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판단됨.
-
- 5) 「지방자치법」 제9조(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⁶⁾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체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서울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됨.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서울상상나라는 「민간위탁조례」 제18조⁷⁾에 따라 실시된 “2018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에서 다수의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

-
-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삭제
 -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다는 의견으로, 적정판정인 91.94점(평균 86.77점)을 받아 평가대상 사무 11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우수사무로 선정된 바 있음.

- 또한 금번 동의안의 내용인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았음.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주요내용(2018년 제1차)>

구분	주요내용
종합의견	다수의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음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문화재단에서 별도법인(뮤지엄경영연구소)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적정 고용승계•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재방문 유도방안, 시설 이용연령 확대, 가족 프로그램 개발 등)•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 시민 만족수준 관리, 만족도 조사 고도화 등 실시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엄경영연구소 설립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부담은 삼성문화재단에서 부담하는 협약에 의해 운영 중이나 향후 재원부담 한계 발생 가능(재위탁협약 체결 시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협의 필요)• 외부환경요인(지역별 어린이발물관 개관, 어린이 인구 감소)에 따라 입장객 및 입장수입 등 전반적인 사업성과 하락(향후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다만 저출산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 및 2022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기술용역 준비 중인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성과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종합 검토 의견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울상상나라 운영’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분야의 노하우를 지니고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받은 현 수탁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은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다양한 체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이 공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8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상상나라는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약기간 만료일 전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나. 이 시설 운영은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및 노하우, 경험이 축적된 조직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 기관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서울상상나라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위탁운영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상상나라 건립계획』 (시장방침 제137호, 2008.03. 20)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창의적인 전시개최와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 상상나라 운영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함.
- 연간 50만명 이상 이용하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로서 체험관 운영 경험이 요구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시와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춘 전문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체험전시물 일체의 기획·개발, 조사·연구, 전시디자인·연출, 전시물설계,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반 업무
-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체험관, 교육실, 사무실 등 전시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용 되는 공간 및 장비·비품 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어린이대공원 내)
- 개관일자 : 2013. 5. 2.
- 시설규모 : 대지 6,600 m^2 , 연면적 19,692.5 m^2 (지하 3층, 지상 3층)
- 지원시설 : 체험관, 가족쉼터, 생각놀이터, 영유아놀이터, 교육프로그램실, 공연장, 카페, 식당 등
- 이용대상 : 영유아 및 어린이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18. 11. 1. ~ 2021. 10. 31.)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뮤지엄경영연구소)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75백만원('18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218백만원, 운영비 70백만원, 사업비 78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상상나라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상상나라 운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18.4월) 결과 : 적격

※ 작성자 :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 주인순(☎ 2133-5110)